

의안번호	제 27 호
의결년월일	1994. 8. 27
의결사항	운동기결

발의자	우태명 의원외 3인
제출 일	1994. 8. 26.

보은군의회제34회(임시회)회기결정의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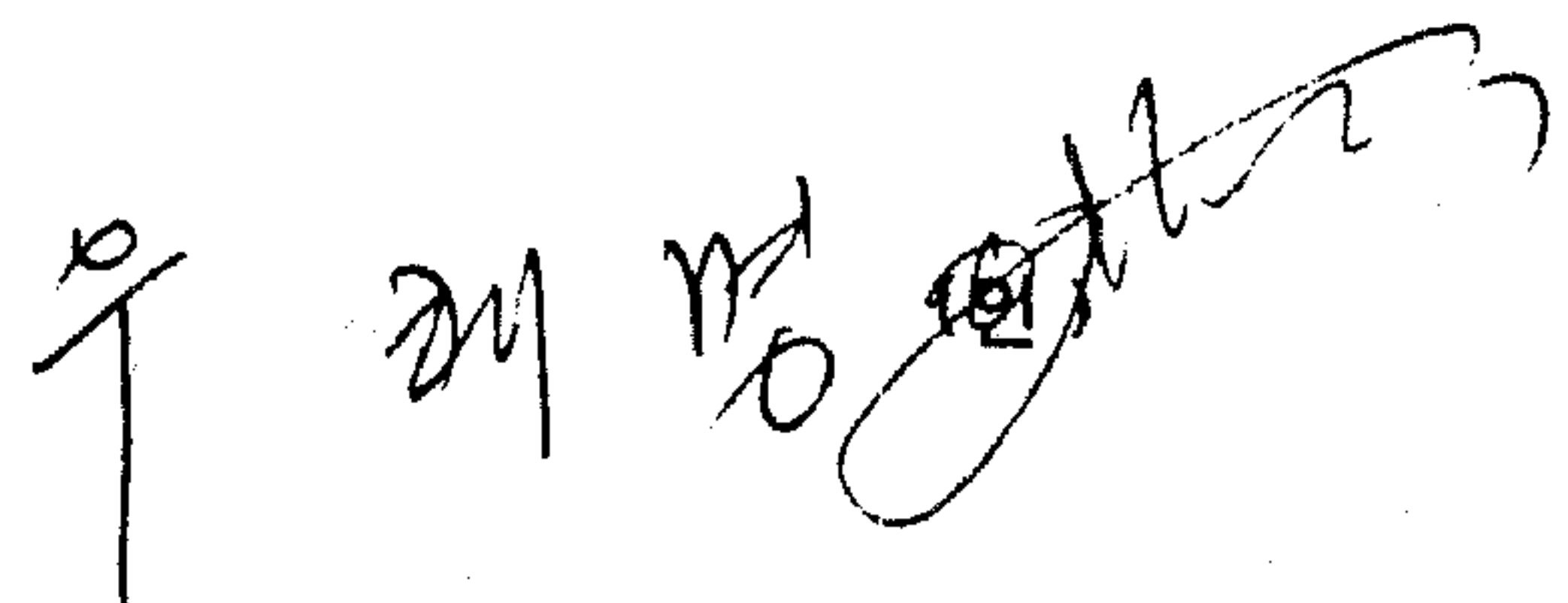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보은군의회 제34회 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 
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 
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안건 1부      끝.

발 의 자 :



( 찬 성 의 원 서 명 : 붙임 참조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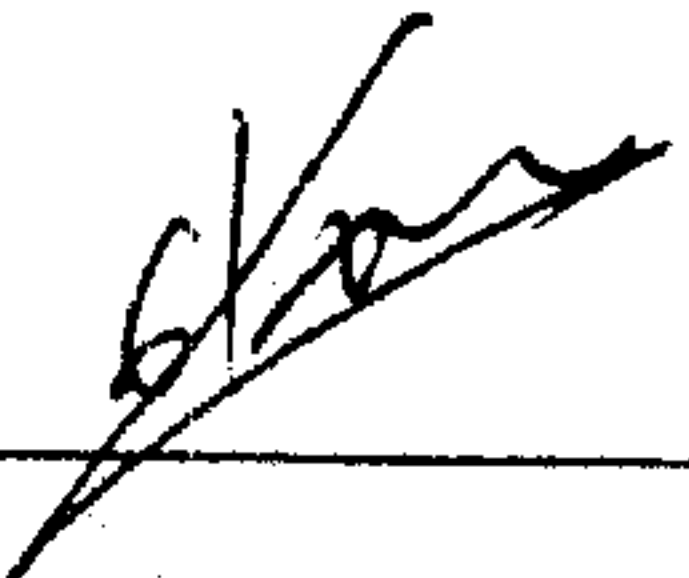
## 1. 제안 설명

보은군의회 제34회 (임시회) 회기를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.

## 2. 제안 이유

- ◇ 제34회 임시회에서는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,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◇ 8월 29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후 보은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 제정안 1건의 조례개정안, 1건의 승인신청안 심의의결과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고자 합니다.
- ◇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.
- ◇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은 휴회한 후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실시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13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합니다.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양승민		
이성복	이성복	
정성호	